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촉진 시책 수립 >
■ 이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26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촉진 시책 수립(제18조)	2
※ 참고자료	
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정현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3. 14.

다. 회 부 일 : 2025. 3.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세계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기술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정부가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항·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촉진 시책 수립(제18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현행법 제18조과 그 위임을 받은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기술협력 관련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 -- -----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설></u>	8. <u>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촉진</u>
<u><신설></u>	②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u>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u>
	1. <u>외국과 체결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른 과학기술공동위원</u>

현행	개정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시설에 대한 보안조치</u> 3. <u>연구개발성과의 대외 발표시 보안조치</u> ⑤ -----제1항 및 제2항-----시책 및 사업----- ----- ----- ----- -----. ⑥ 제5항-----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의-----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¹⁾

제18조에 따라 정부가 국제공동연구개발 활성화,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활용 등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세계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18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법률로 상향입법하려는 취지로 보임([참고]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18조제2항은 현행 시행령 제5조를 상향규정하는 것으로, 과학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1)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1. (생략)

12.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3. ~ 16. (생략)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후략)

사업을 규정하면서 ‘주요 전문분야별 국제공동연구 관련 수요 및 활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현행 시행령과 차이가 있음.

안 제18조제1항에서는 제8호로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촉진’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관련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서 안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내외 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으로 보임.

둘째, 안 제18조제3항은 현행 시행령 제6조를 상향규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 과학기술자가 소속된 기관이 국내 과학기술자를 외국에 파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자 파견을 위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18조제4항은 현행 시행령 제7조를 상향규정하는 것으로,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이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성과 등 주요 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정부가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²⁾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보안대책에는 연구개발과 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의 보안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하고 있는데,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의 접촉을 통해 연구개발성자가 국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다음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4.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의 보안관리 방안
 5. 6. (생략)
 7. 제6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과의 보안에 관한 협력 방안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2.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3.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 제정·운영 방안

과 같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40억 5,000만원(연평균 48억 1,000만원)으로 추계되었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안 제18조제2항 및 제5항)	주요 전문분야별 국제공동연구 관련 수요 및 활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	30	30	30	30	30	150	30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4,780	4,780	4,780	4,780	4,780	23,900	4,780
합 계		4,810	4,810	4,810	4,810	4,810	24,050	4,810

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사업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기간 동안 사업 대상 수 및 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3.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문 의 처

02)6788-5227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연구사업,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및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사업을 말한다.
2. “국제공동연구사업”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시설·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3.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국외현지연구·협력센터 등 외국연구소의 설립 또는 그 국내 유치 지원사업
 - 나. 교포 과학기술자와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국내 유치·활용 및 국내 과학기술자의 해외파견 등 과학기술인력의 교류사업
 - 다. 외국과학기술정보의 수집·활용사업
 - 라. 다자간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 등에의 참여사업
 - 마. 그 밖에 과학기술국제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반조성사업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3. 삭제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

게 할 수 있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에 대하여 사업과제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사업과제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협약에 포함될 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과학기술협력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외국과 체결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개발도상국가 및 자원보유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사업의 추진
3. 주요 전문분야별 기술조사단의 상호 파견 및 공동학술회의의 개최
4. 그 밖에 주요 국가와의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6조(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정부는 국제공동연구 또는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제7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보안관리) ①전문기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연구개발결과 등 주요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개발 관련정보 및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 결과의 대외 발표시 보안조치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기관·기관 또는 단체의 보안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관리상 취약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